임금 등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 [3심]	사건유형	기타
원 고	○○○	피 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3심]2021.06.10. 상고기각	비 고	[1심]2019.11.20. 원고패(교육감 승) [2심]2020.01.15. 항소기각(교육감 승) [3심]2021.06.10. 상고기각(교육감 승)
사건개요	❍ 원고는 2018. 9. 3.부터 2019. 1. 31.까지 ○○○학교에서 당직경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2018. 9. 1.자)과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계획(2018. 7. 18.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계약하였음. ❍ 원고는 본인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인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지급하지 않은 시급의 임금(2018.9월~2019.1월) 5개월분과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약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피고 측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야간근로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음. ❍ 주휴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고, 피고가 매월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